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3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3. 10

(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 세 월

나. 개정사유

○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으로 판매 인상 시점을 중심으로 신.구 봉투를 구별하기 위해,

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일반용 색깔을 "흰색"에서 "녹색"으로 변경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일반용 색깔을 "흰색"에서 "녹색"으로 변경

(제7조 ②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○ 지난 '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규격봉투의 판매 대금을 지금까지 유지 해오고 있었으나,

○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중의 하나로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화 하여,

○ 오늘 4월 1일부터 49%인상한 금액으로 판매키로 하고 이의 구분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코자 규격봉투의 색깔을 변경코자하는 개정 조례안 임.

○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함은 매우 바람직스런 조치라 판단되며,

○ 다만, 요금을 인상 현실화 하였다고 하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군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 이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등 개정절차나 상위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(질의요지)

○ 수수료 사용료가 ℓ당 12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수거시 수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기능이 없어 개략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?

(답변요지)

○분뇨등 합잡물은 미터기 사용이 곤란하나 기술적인 문제점 검토를 보겠음.

5. 토론요지

" 생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